

제236호 (2009. 12. 7)

■ 경제 동향

- 11월 CBSI 2개월 연속 하락

■ 정책·경영

- 적격심사제, 운찰제 요소 개선 필요
- 조달청의 'PQ 심사기준' 개선 방향 분석

■ 정보 마당

-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국내 파급 영향 크지 않을 듯”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하도급 계약도 계약자유원칙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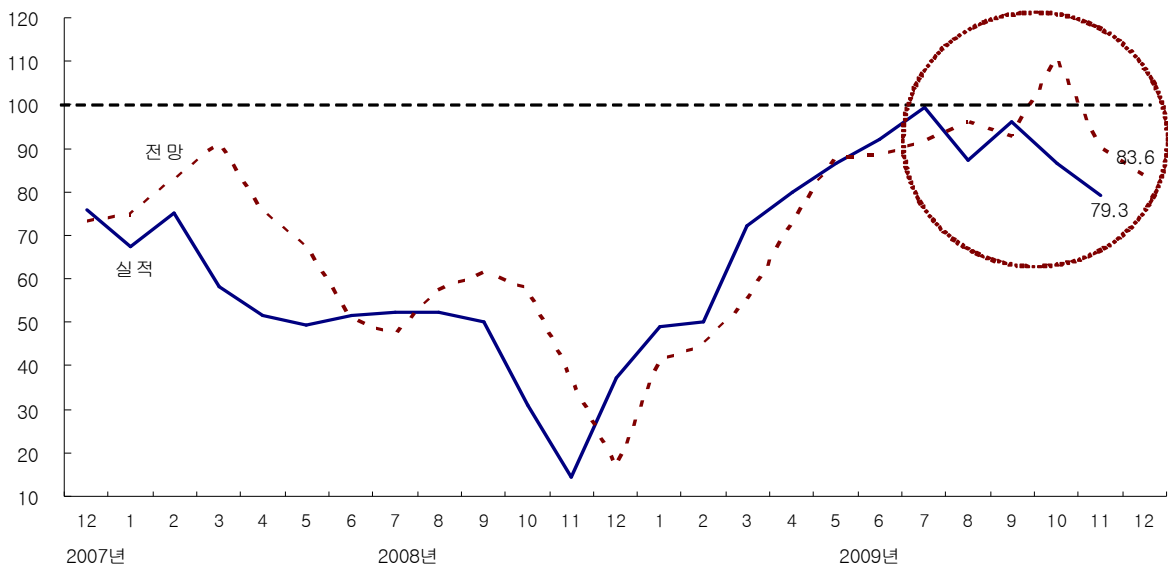
11월 CBSI 2개월 연속 하락

- 재정효과 감소 및 불안한 주택시장의 영향, 4월 수준으로 회귀 -

■ 11월 CBSI, 전월대비 7.0p 하락한 79.3 기록해 체감 경기 부진

-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7.0p 하락한 79.3을 기록해 지난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그 결과 지수가 지난 4월 수준(80.0)으로 돌아감.
 -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것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11월 이후 처음임.
 -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다음 올 8월에 12.1p가 하락했지만, 9월에 다시 8.9p 반등했는데 이후 2개월 연속하여 지수가 하락함.
 - 이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SOC 예산 증액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인 주택분양 경기 역시 최근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또한, 향후 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공공 발주 물량 축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 등 불확실성 요인이 적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중견업체 지수, 5개월만에 기준선 아래로 다시 하락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5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으며, 지난 8월 이후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하여 부진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11월 들어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5.4p 하락하여 2개월 동안 29.7p나 하락하며 84.6을 기록했는데, 특히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100.0)을 상회하던 지수가 5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15.0p 하락해 2개월 동안 21.5p나 하락하여 88.5를 기록했고, 대형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5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음.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1.8p 상승한 62.7을 기록. 중소기업은 하반기 SOC 예산증액 효과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 이미 지난 8월에 지수가 24.9p나 하락한 49.3을 기록해 지수 상승 초기인 지난 1월(50.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이후 계속 50선에 머물던 중소기업지수는 11월 들어 소폭 통계적 반등을 보임.

■ 인력·자재 수급상황 양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여건은 다소 악화

- 인력, 자재부문 수급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가운데, 자금 상황이 조금 악화되었고, 현재 까지도 자재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9월까지 전년 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05.5, 102.2를 기록하며 수급 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95.3을 기록해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 자재비 지수는 90.2를 기록하여 작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7.1, 83.5를 기록하여 지난 상반기 공공 부문의 선급금, 기성 지급 등으로 개선된 자금 관련 지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적격심사제, 운찰제 요소 개선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단순한 확대보다 적격심사제 본래의 기능 회복이 바람직 -

■ 적격심사제 개선으로 기술 경쟁 강화 예상

- 정부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운(運)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평가 구조를 탈피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예정가격의 88% 미만은 감점하고, 80% 미만은 자동 탈락시키고 있으나, 입찰 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점수가 높아지도록 개선(단,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은 동일 점수로 간주하여 일정 수준의 낙찰률을 보장)
 - 예정가격 대비 80%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나, 가격과 공사이행 능력 점수의 합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전환
 -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실적 우수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일부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운영
- 최근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적격심사 개선 방안을 보면, 모든 공사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시공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종별로 10년간 과거 실적을 실적 연한에 따라 경과연수계수를 곱하여 차등 적용할 전망이다.
 - 나아가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측면에서 '전문화율'을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를 유도하며, 시공 평가결과의 적용 공사 및 배점 확대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할 전망이다.
 - 신인도 측면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나 세금 체납 등 사업윤리에 현저히 저촉되는 업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설기술 인증업체에 대해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 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 추구 필요

- 정부의 적격심사 개선 방향을 보면,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측면에서 전문화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특화 혹은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됨.

- 과거 공사실적이나 전문분야별 건설인력 보유 실태, 공사 유형별 발주량 전망, 공사 유형별 경쟁강도 전망 등을 토대로 중점 수주 분야를 선정하고, 수주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함. 또한, 시공실적 보유업체와의 인수합병(M&A) 등을 추구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시공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요구됨.

■ ‘직접 시공 비율’ 평가 필요, ‘시공 여유율’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봄직

- 적격심사낙찰제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많지만,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실상 종합평가낙찰제로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과 유사한 제도임.
 - 그러나,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적격심사제에 문제가 있다 하여 이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기 보다는, 적격심사제를 개선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접근 방식임.
-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수주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평가항목을 보면,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10~14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보다 ‘직접시공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종합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기술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나, 실제 투입예정인 공사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
 - 건설업체 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업체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여유율’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물량 배분 정책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
- 나아가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건설업체 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소 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를 벤치마킹해 과거 공사경험이나 시공평점, 투입기술자의 능력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제안입찰을 가미한 입찰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조달청의 'PQ 심사기준' 개선 방향 분석

- 기술력 평가 시스템 개발 등 실질적 공사수행능력 위주의 평가 추진 -

■ 개선 경위

- 정부가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기획재정부의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PQ심사 기준 변별력 강화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PQ 대상 및 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조달청도 PQ 심사기준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조달청의 PQ 심사기준 개선의 기본 방향

-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수행능력 위주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양한 심사항목을 활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개발
 -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촉진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평가 모델 구축
 -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분야별 주요 개선 방안

- 동일 공종 실적 연한에 따라 차등 평가
 - 현재는 공종별로 과거 10년간의 실적이면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적연한에 따라 해당 실적에 경과연수계수를 곱하여 차등 평가
 - ※ 경과연수 계수(예시) : 5년 이상 → 0.8, 7년 이상 → 0.6
- 규모로 시공경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일부 공종(예 : 교량이나 터널)은 평가등급 구분을 금액과 규모기준을 함께 평가하던 방식에서 개선하여 금액으로 통일하여 평가
- 해당 공종의 전문화를 반영
 - 시공업체가 해당공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있는지를 프로젝트 완공 건수를 토대로 평가
 - ※ 전문화를 산정(예시) : 최근 3년간 해당 공종의 공사 건수(또는 실적)/ 최근 3년간 해당 공종 전체 건수(또는 실적)

-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 강화
 -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원 기술자를 포함한 일반기술자에 대한 배점은 축소하고, 현장 대리인 경력을 중요시하여 경력기술자의 배점 확대
- 신기술 개발 및 활용 배점 상향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배점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기본점수 삭제
-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경영상태 평가 강화
 - 대표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강화하고, 구성원의 경영상태 자격기준은 현행 유지
- 기 시공한 공사의 시공평가방법 개선
 - 시공평가결과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체가 보유한 해당공종의 모든 실적으로 자동 평가
 - 산술평가방식으로 평가하던 것을 변경하여 공사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실적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강제 차등방식 적용
-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감점 상향
- 국세체납 등 사업윤리에 저촉되는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점
- 녹색인증제도 도입(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인증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업체에 가산점 부여

■ 향후 과제

- 앞으로 제도개선의 시행 과정에서 건설업계에 지나친 충격이 없도록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검토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아직 데이터가 없거나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한 사안도 상당히 있음.
 - 또한, 중견 이하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급격하게 개선 시행할 경우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백영권(연구위원-ykbaek@cerik.re.kr)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국내 파급 영향 크지 않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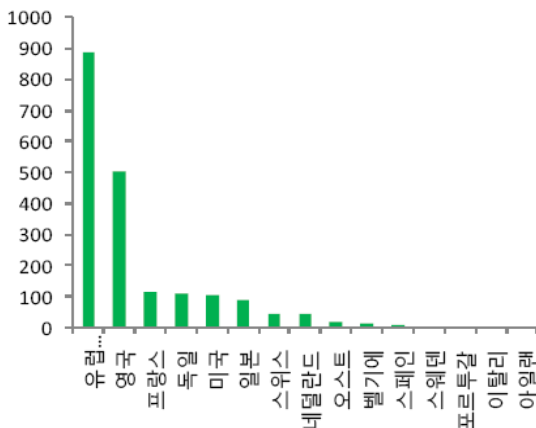
-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금 중 중동계 자금 4억 달러로 전체 차입금 대비 0.3%에 불과 -

■ UAE 국영기업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 지난 11월 26일 UAE의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
- 현재 두바이의 대외 차입액은 800억~9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유럽 국가들이 400억~6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국제금융센터).
※ UAE 전체 : 약 1,231억 달러(2009. 6, BIS)
- UAE 전체 차입액으로 살펴보면 영국이 502억 달러로 익스포저(위험노출)가 제일 크며, 프랑스(113억 달러), 독일(106억 달러), 스위스(46억 달러), 네덜란드(45억 달러) 등으로 나타남.
 - 은행별로는 HSBC가 170억 달러(2008년 말, UAE은행연합회)로 가장 많으며 Standard Chartered(78억 달러), Barclays(36억 달러), ABN(RBS인수, 22억 달러) 등의 순임.
 - 대부분 은행들의 대UAE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1~2%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HSBC(2%)와 Standard Chartered(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대UAE 국가별 익스포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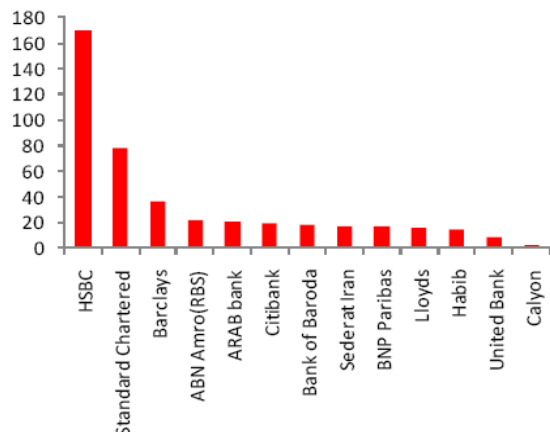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BIS, BoA, RBS, UBC, CS

〈대UAE 은행별 익스포저〉

(단위 : 억달러)



자료 : UAE은행연합회(2008)

* 모라토리엄(moratorium) : 전쟁·천재·공황 등에 의하여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 직접 관련된 국내 건설업체 공사, 2건에 불과

-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는 현재 2건에 불과. 당초 관련 공사 총 6건 중 3건은 완료(서영ENG, 현대건설), 1건은 계약이 취소(삼성물산 : 팜주메이라 빌리지센터)됨.
 - 삼성물산의 공사비 잔액은 2.9억 달러로 추정되나, 기존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을 받아 왔으며, 선언 1개월 전부터 공사를 중단해 실질적인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두바이월드 관련 공사 현황〉

(단위 : 천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기	비고
삼성물산	두바이 워터프론트-운하 교량공사 CB01, CB02, CB03	NAKHEEL	69,482	2007-12-08	시공중
				2010-02-26	40.7%
삼성물산	두바이 팜제벨알리 교량공사	NAKHEEL	350,287	2007-04-01	시공중
				2011-11-30	30.4%
삼성물산	팜주메이라 빌리지센터	NAKHEEL	0	2008-09-30	파기
				2013-10-31	0.0%
서영ENG (하청)	두바이 팜제벨알리 교량공사 - 상세설계	NAKHEEL	831	2007-08-16	시공중
				2007-12-09	90.0%
서영ENG (하청)	두바이 팜 제벨알리 교량공사	원청:삼성물산	251	2006-07-06	준공
				2006-11-09	100.0%
현대건설 (하청)	팜데이라 준설/매립 공사	NAKHEEL	86,754	2006-01-17	시공중
				2010-12-31	67.8%

주 : 조사 기준일은 2009. 11. 30일이며, NAKHEEL은 두바이월드의 자회사임 ; 국내 업체의 하청분은 모두 공사 완료 상태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국내 금융시장의 대두바이 익스포저 및 중동계 차입규모가 크지 않아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 두바이 관련 국내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총 8,800만 달러(대두바이월드 3,170만 달러)로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17% 수준.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금 중 중동계 자금은 4억 달러로 전체 차입금 대비 0.3%에 불과(금융위원회, 11.29)

■ 국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총체적 점검 필요

-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 금융기관의 영향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 UAE에서 대출을 50% 가량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익스포저가 제일 큰 HSBC와 Standard Chartered 손실액은 자기자본의 1%, 순이익의 5% 이내에 불과(Goldman Sachs)
-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세계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발생한 만큼 국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1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주최 외부평가위원회 회의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 집합투자업(부동산) 및 신탁업(부동산) 관련 심의
12.2	국무총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호민관 1차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정부가 지원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인 기업호민관 주최로 건설산업 규제개혁 관련 논의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해피하우스 관련 용역 점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시범사업(해피하우스) 관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중간 검토
12.3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과 주최 전문가 공동주택관리제도 관련 토론회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회 구성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국토해양부 · 주택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협회 주최 주택정책방향 모색 워크숍에서 두성규 경제연구실장이 주제 발표 참여 - 발표주제 : 주택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주택정비과, 택지개발과 등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 토론
12.4	한국건설VE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건설 VE경진대회'에서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이 주제발표 - 발표주제 : 최고가치낙찰제 하에서 VE 활용방안(기술제안입찰을 중심으로)

■ 연구원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인력 생산성과 인건비 국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과 인건비를 국가 소득 수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그동안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과 인건비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 인건비는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며, 과거와 같이 저가의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내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인건비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남.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경쟁에서 탈피하여 건설인력의 전문지식 및 숙련도 향상 등 새로운 경쟁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연구결과물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열람 가능

“하도급 계약도 계약자유원칙 지켜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고 한다. 과거에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발주자는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포착하기 힘들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에 부도를 내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 모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을 잃게 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한이 약해지고 이는 공정 관리와 품질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원도급자를 배제하고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원도급자가 갖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생기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등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넷째, 발주처의 행정낭비다. 발주처가 수많은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려면 추가적인 행정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것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하도급 계약이 규제 대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하도급에서 각종 규제의 근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는 오히려 건설산업보다 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건설 하도급 계약은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 <건설경제, 2009. 11. 12>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